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4. .
발 의 자 : 이용범·이강호·류수용·
안병배·최용덕·신동수 의원
(찬성자 1인)

1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 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,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23조 제7항 신설)
 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 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
 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.</u></p> <p>1. <u>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</u> 2. <u>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</u> 3. <u>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</u>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p>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</p> <p>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 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<p>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.

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3조 특별 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.

⇒ 특별휴가는 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음.

4. 작 성 자 :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